

通貨還收 정책이 정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 延支給 수입기간 단축과
輸入보증금 徵求 의무를
중심으로 —

金 東 哲
(雙龍精油 業務1課長)

1. 머리말

우리말 속담에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논리적 妥當性을 떠나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국내 精油産業도 64년 처음 정유 공장이 가동된 이래 4半世紀 동안 무수한 量的 質의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의 변화가 강산이 두 번 바뀔 정도에 필적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도 國家基幹産業 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제도적, 구조적 여건변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있는 현시점에서 더욱더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유사마다 경영역량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변화속에서도 精油社의 原油導入資金調達方式 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 다름아닌 延支給(유전스) 수입방식이다. 原油도입시 유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原油購入결제자금이 막대할 뿐 아니라 원유를 선적한 후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국내정유 산업의 경우, 1회전 기간이 대략 100일에서 120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유전스는 정유산업의 젖줄이며 필수 불가결한 여건으로써 정부의 通貨政策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通貨당국은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의 黒字기조하에 통화증가율이 금년도 역대 수정 목표치에 근접함에 따라 통화증발 요인을 단계적으로 흡수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연지급수입 기간 단축등 일련의 해외부문 통화환수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조치는 관련산업에 상당한 자금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정부의 해외부문 通貨還收 조치내역과 동조치가 정유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精油業界의 立場을 開陳코져 한다.

2. 國際收支 흑자기조의 通貨管理對策

작년 하반기 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국내경기는 금년 상반기 중에도 円화강세, 國際原油價의 급락과 국제금리의 하락등 대외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고 설비투자과 소비등 內需도 되살아난데 힘입어 제

조업 생산이 크게 伸張되고 가동률도 계속 높아지는등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내물가는 원유가 하락에 힘입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거래도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데다 국제원유가 및 금리하락으로 수입및 이자상환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 되었다.

이와같은 경제여건 호전으로 금년 상반기중 총통화(M₂)는 1조895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平殘基準으로 15.8% 증가 하였으며, 6월중에는 17.9% 증가하여 금년도 修正 抑制線 18%(당초 12~1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화당국은 상반기중 총통화 증가가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 환수폭이 지난 해 보다 크게 감소된데다 實物經濟의 호조에 따른 무역금융중심의 민간부문 여신확대에 기인한다고 판단,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외부문 통화환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동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인접국인 日本 및 台灣의 국제수지흑자시태초기의 해외부문 通貨對策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1단계 통화환수조치

가. 연지급 수입기간 단축

財務部는 지난 7월9일 외국환 관리규정 제9-11조를 개정하여 연지급 수입기간을 종전보다 30일 단축, 시행토록 하였다. 즉 종전의 90일 이내인 일반 품목의 연지급 수입기간은 60일 이내로, 종전 120일 이내였던 원유 및 LPG는 90일 이내로 수입기간을 단축하여 일반 품목의 경우는 7월10일부터 원유등은 87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다만 7월10일 이전에 정상의 결제인증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대로 하되, 기한부 수입신용장 방식에 의한 정상의 결제인증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다.

재무부는 금번 연지급 수입기간 단축조치의 취지를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가억제, 단기의채규모의 축소, 외채구조의 건전화 유도 및 연지급결제방식에 의한수입수요 조절을 통한 수입억제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韓國銀行의 재할인 금리 및 비율 조정

韓國銀行은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의결에 따라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 금리를 7월 10일 부터 연5%에서 7%로 인상하는 한편, 무역어음담보대출 비율은 70%에서 60%로 10% 인하하였다.

이번 상업어음 재할인 및 무역어음담보 대출의 금리및 비율 조정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收支補填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유지 되어온 재할인 금리의 상향조정을 통해 정통적 통화관리 수단으로서의 중앙은행 재할인 제도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한은 차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外換 賣買率差 확대

財務部와 韓國銀行은 外國換 管理規定 및 外國換業務取及細則을 各 일부개정 금융기관의 전신환 매입, 매도율 差를 종전 0.5%에서 0.9%로 확대하여 7월10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外換賣買率差는 80년초 1%까지 운용되었으나, 제2次 석유회기의 영향으로 국내의 景氣가 둔화됨에 따라 업계의 부담 경감을 통한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되어 왔다.

(2) 2단계 통화 환수조치

財務部는 1단계 해외부문 통화환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7월중 통화 증가율이 17.9%에 이르자 2단계 대책으로 외화대출제도의 조정, 수입보증금 징구대상확대, 연지급수입 대상 품목 축소 및 外銀支店의 스와프 한도축소 조치를 단행 8월21일 부터 시행 하였다.

가. 외화대출 제도의 축소조정

外貨貸出融資對象에서 국산기계구입자금과 外貨貸出 原利金 상환용자금을 제외하는 한편, 무역외 지급자금과 차관원리금 상환용 자금의 외화대출 용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었으며 원자재 수입용 외화대출 용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반면 외화대출 연체자율은 원화대출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20%에서 19%로 조정했다. 재무부는 금번 동제도의 조정으로 3000억원의 통화환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러 외화대출액이 원화대출 증가로 이어질 경우, 통화환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물론 수출용원자재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수입보증금 징구대상 확대

지금까지 수입보증금은 일람불 수입의 경우에만 10%를 징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기한부 수입에도 징구하기로 적용대상을 확대 하였으며, 동조치로 인한 통화환수 효과는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연지급수입제도의 조정

연지급 수입대상 품목을 실행관세율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축소하고,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對日지역 수입억제를 위하여 항해일수 10일 이하 지역으로 부터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하기로 했다.

(3) 日本 및 台灣의 해외부문 통화 증발시대책

日本과 台灣의 경우는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자 무역정책, 외환, 재정, 통화신용정책 등을 적절하게 혼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화관리에 성공했다.

가. 日本의 경우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된 64년부터 68년까지는 별다른 대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69년 경상수지 흑자가 21억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화증발 대책을 실시 하였다.

먼저 무역정책부문에서 수입자유화확대 및 관세율인하, 수입담보금제도폐지, 日本은행의 수입자금대출제도 도입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외환정책분야에서는 외국환은행의 대외채무잔액동결 및 보유외환예금의 円貨전환규제강화, 外銀支店에 대한 규제강화,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외화대출제도 실시, 외국환집중제도폐지등 조치를 취했다. 또는 재정분야에서는 만성적 적자부문인 식량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보전확대, 재정지출의 축소 및 이연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였으며 71~72년 중에는 국제발행을 대폭 확대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통화신용 정책분야에서는 공정할인율의 연속인상, 기준율 인상 및 적

용대상 확대, 은행별 자금포지션 규제, 日本은행의 채권매매 조절기능 강화, 어음매매조작제도 도입등으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에 대처 하였다.

나. 台灣의 경우

70년에 처음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됨으로써, 무역정책은 수출자금 대출금리 인하, 외화수입금융제도등을 도입하였으며, 외환부문에서는 국내은행 및 상사의 1년 이내 단기현금차관도입 전면금지, 기입도래차관의 연기불허, 환율평가절상, 선물환율운용 및 거주자의 해외송금 제한을 완화 하였다. 또 재정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의 추가적 확대 불허 및 세수증대를 통한 흑자재정유지, 단기국채및 국고채권 발행개시와 함께 주기적으로 공개시장에서 입찰방식에 의한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으며, 통화신용정책에서는 금리정책의 탄력적응용, 기준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강화, 기준율 인상, 중앙은행의 예탁증서 매출제도 및 저축채권 발행제도 도입,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중앙은행 재할인비율 인하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3. 精油産業의 경영여건과 자금사정

(1) 精油産業의 경영여건

금년들어 계속되고 있는 國際金利 인하, 달러화 약세, 原油價 하락 등 소위 3低時代를 맞이하여 국내경기도 수출의 급신장, 내수회복 등으로 2/4분기중 종합경기지수가 111.7을 기록한 바 있으며, 상반기중 지수도 경기분기점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국면은 하반기에도 그대로 계속될 것으로 관계기관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상승추세속에 기업의 자금수급사정은 불안해 상반기중 기업자금사정지수가 10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資金需要증가 요인이 외에 정부의 通貨환수조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호황에 비추어 精油産業은 상반기중 원유처리 실적이 85년 상반기에 비해 2.4%(내수 0.8%, 임가공 10.6%) 소폭증가해 생산은 2%증가에 그쳤으며, 수요는 내수부문이 5.7% 증가한데 반해 해외부문이 21.2%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2% 증가하였다. 더구

나, 정유업계의 상반기 매출액은 2조 9780억원(추정)으로 작년보다 12.7% 감소하여 경기호전에 따른 탄산업의 매출액 증가와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차례의 국내 石油類 가격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저성장에 비추어 국내 精油産業이 안고 있는 보다 큰 문제점은 국제원유가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자금부족의 문제다. 이는 국제원유가의 하락에 따른 즉각적인 국내油價인하 조치와 이후 국내원유 도입단가의 계속적인 하락에 따른 차익을 石油事業基金 등 정부부문으로 흡수하는 조치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같은 운영자금의 부족사태하에 국내석유류 수요구조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重質油分解施設 설치, 쾌적한 환경보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脫黃施設·無鉛휘발유제조시설 설치 등에 막대한 투자소요를 안고있는 실정이다.

(2) 精油業界의 자금사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國內精油業界는 原油를 산유국에서 선적할 때부터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代金を 회수할때까지 즉, 原油의 수송·저장, 제품재고유지및 국내유통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原油延支給輸入金融으로 조달하여 왔다. 86년 들어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 精油業界의 原油 延支給수입금융규모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운영자금의 소요액은 거의 감소하지 않아 심각한 資金難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자금부담은 정부의 高油價維持政策, 石油事業基金 및 關稅의 대폭적인 인상 및 早期징수, 精油業界의 보유 재고를 고려하지 않은 국제原油價格하락분의 즉각적인 환수조치 등에 기인하고 있다. 즉 국제원유가가 하락하여 국내油價를 조정할 경우 원유가 通關·정제된 후 제품으로 出荷되어 판매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조정하여야하나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油價 인하시점과 原油代金결제시점과의 시차에 따른 자금부족과 基金·關稅 납부시점과 販賣代金回收時點의 차이에 따른 자금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85년 하반기 이후 국제원유가하락에 따른 두차례의 국내유가인하와 6차례에 걸친 基金 關稅인상으로 精油業界의 자금부담은 대략 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자금난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

제原油價가 상당수준 상승되거나 신규적인 추가자금의流入이 있어야 하나, 現今의 國際石油市況으로 판단 할때 원유가격의 상당수준 상승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신규추가자금의 유입도 국내정유사들의 系列企業群 여신규제로 인한 運營資金借入의 限界·担保설정능력의 제한 및 國內金融의 與信提供능력제한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精油業界는 엄청난 자금부담의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총 1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바 있으며 또한 1280억원의 산업은행 외환포시자금을 용자·사용하는 등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정유업계의 자금난을 충분히 인식, 石油事業基金의 일부 징수유예방안을 추진중이며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사업기금의 징수유예가 실시될 경우 자금부담해소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 86년도 정유업계의 자금부족은 약 9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 通貨還收조치의 영향과 精油業界의 입장

전술한 바와 같이, 國內精油業界는 산업은행의 외화표시자금 용자 등 금융기관차입과 石油事業基金의 일부 징수유예조치를 감안하더라도 약 900억원의 자금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通貨當局이 해외부문의 通貨增發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1·2단계 通貨還收조치를 취함으로써 精油業界는 87년부터 약 2900억 원의 追加資金負擔을 안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해외부문 通貨환수조치중 精油産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延支給輸入期間 단축과 수입보증금 10% 徵求義務 부과를 중심으로 精油業界에의 영향과 이에 대한 精油業界의 입장을 살펴보자.

延支給輸入期間 30일 단축조치를 全品目에 無差別的으로 적용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原油延支給 수입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어 정유업계는 약 2000억 원의 추가자금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一覽拂輸入에만 徵求하던 輸入保證金이 期限附輸入에도 확대적용됨으로써 原油수입시에도 내년부터는 수입보증금을 예치하게돼 약 900억 원의 추가 자금부담이 불

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유업계의 자금부담은 또다시 증대되어 87년도에 38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자금부담은 국내금융시장에서 조달가능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서 정부가 통화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유업계의 자구노력에 의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현행 油價정책유지를 전제할때 정유업계의 운영자금소요액의 감축여력은 거의 없으므로 무리하게 재고감축 등을 통한 운영자금감축을 시도할 경우 국내석유의 안정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화당국은 延支給輸入期間 단축조치의 배경을 해외부문에서의 통화량 증가억제, 短期外債규모의 축소, 연지급결제방식에 의한 輸入수요조절을 통한 輸入 억제도모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石油은 국민경제에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서 안정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수입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외채규모축소 및 국제수지개선 등에 의한 통화증발요인 흡수 측면에서 볼때도 원유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영향이 국내통화 및 외채 등에 반영되어 동일수준의 축소효과가 이미 발생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유의 연지급수입이 국내통화증발요인으로 거의 작용하지 않는 점과 전술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정유업계의 자금난을 고려할 때 原油延支給 수입기간은 현행과 같이 120일로 還元조치됨으로써 국내 石油類의 안정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輸入보증금 徵求制度는 開途國 등에서 유한한 외화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輸入수요에 대한 差別的 취급이 필요한 경우 취하는 조치로서 그 기능은 수입품목 조절·수입을 억제하는 직접기능과 국내금융사정을 조절하는 간접기능이 있다. 따라서 石油가수입억제나 조절대상이 될 수 없는 점과 석유연지급수입이 국내통화증발요인으로 거의 작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石油延支給수입에 대한 輸入保證金 徵求의무는 당연히 해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5. 맺는말

지금까지 정부의 국제수지흑자시대의 通貨환수조치와 이조치가 精油産業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精油業界

의 입장을 좁은 識見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제 국제수지흑자시대의 通貨管理方案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고 금번 해외부문 通貨환수조치에 대한 정유업계의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끝을 맺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日本이나 台灣이 국제수지흑자를 실현하기 시작하던 때와는 달리 500억원에 가까운 外債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흑자의 지속적 확대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이 있더라도 주로 財政·金融政策 등 국내부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財政運用의 개선 즉 불필요한 신규사업지출의 억제, 양곡관리기금 등 구조적 적자부문의 개선을 통해 財政赤字를 축소하여야 하며 재정적자보전재원을 한국은행차입이 아닌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는 관행을 확립하고 재정증권발행제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원적통화공급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정통적 통화조절수단에 의한 통화관리를 도모하며 공개시장조작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기타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등 불가피한 정책금융도 통화관리정책과 적절히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해외부문에 대한 급격한 금융억제조치는 모처럼의 경기호전속에 자칫 민간부문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유산업의 경우 국내통화증발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원유연지급수입기간 30일 단축과 수입보증금 징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게되었다. 이러한 자금부담이 현행 油價정책으로 인한 구조적인 자금부담에 가중됨으로써 국내석유류의 안정공급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유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며 석유수입이 필수 불가결한 점을 감안할 때 원유연지급수입기간은 현행과 같이 120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며 수입보증금 징구의무도 당연히 해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당국에 간곡히 청하는 바이다. ㉞

